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 분석

석 상 훈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은퇴, 소득, 소비, 소득대체율

■ 투고일: 2010. 10. 7 ■ 수정일: 2010. 12. 6 ■ 게재확정일: 2010. 12. 7

I.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하여 은퇴 및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최근 봇물 터질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은퇴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김지경, 2004, 2005; 안종범·전승훈, 2004 등), 은퇴 이후의 소득원에 대한 연구(김수완·조유미, 2005; 최효미, 2007 등), 은퇴 시에 필요한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연구(원종욱, 2000; 여윤경, 2002; 안종범·전승훈, 2005; 백은영, 2008 등), 그리고 은퇴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여윤경 외, 2005; 백은영, 2008 등) 등이 있다. 또한 “retirement-consumption puzzle”로 불리는 은퇴 전후의 소비 변화에 대한 연구(안종범·전승훈, 2004; 석상훈·장선구, 2009 등) 등이 있다.

은퇴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정은 경제학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소득 흐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에 의해 시기별로 저축 또는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은퇴시점에서 고려해 보면, 은퇴 이후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지만 소비는 은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의 소비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의 소득 흐름과 유사한 소득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이 가설이 성립됨을 보여주는 것이 쉽다. 왜냐하면 생애주기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에 도입된 패널조사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장기간에 걸친 생애사적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은퇴 관련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거나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은퇴자나 은퇴가구의 실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전혀 다른 코호트(cohort)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그 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실제로 은퇴한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지출로 측정된 가계 재정상태가 은퇴라는 사건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필요소득수준을 목표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은퇴자 세대 가운데 추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에 도달한 은퇴자 세대는 어떤 집단이며 노후소득 마련 방법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유효하게 작동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고용상태와 가계 재정상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장에 이어 2장에서는 은퇴와 관련한 기존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구축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수준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은퇴자 세대가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도록 한다.

II. 문헌고찰

1. 은퇴정의

은퇴에 대한 정의는 연구주제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기존연구에서 사용되는 은퇴에 대한 정의는 크게 분석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정의와 연구자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정의로 나누어진다. 먼저, 사회조사에서 응답 대상자에게 은퇴에 대한 판단기준¹⁾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본인이 은퇴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동시장에서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적절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은퇴와 관련된 실태분석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본인이 은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종단연구에서 이

1)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은퇴와 관련한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은퇴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문항이 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과거에 응답했던 결과와의 오류 체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중·고령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은퇴관련 문항은 세 차례만 조사가 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 조사된 결과를 패널자료로 연결시켜보면 은퇴시기와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널자료 분석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는 달리 분석대상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한 은퇴의 정의로는 특정 연령대 이상을 은퇴자로 구분하거나 공적연금 수급자를 은퇴자로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하게 은퇴자를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연령²⁾을 기준으로 은퇴자를 판별한다는 것은 ‘고령자 = 은퇴자’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대상의 연구와 은퇴자 대상의 연구는 소득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인 가구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효미, 2007). 따라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 은퇴가구의 경우에는 이들 연령 집단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구주의 특정연령을 근거로 은퇴자를 정의할 경우에는 은퇴자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특정연령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문제 등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은퇴자를 판별하는 방법 또한 은퇴자를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 수급대상자를 은퇴자로 판별하게

2) 주관적 정의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개인에 따라 불일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년도 조사에서는 1998년에 은퇴자라 대답한 경우 3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에 따라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수 있으며 1998년 이전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판단하여 은퇴시기가 변경되어질 수 있다.

3) 은퇴자로 판별하는 연령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55세, 60세, 또는 65세의 연령기준이 사용된다. 이를 판별하는 기준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6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기준으로 고령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6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60세 이상 재취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되면 대부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선별되고 일부 국민연금에서 특례노령 연금수급자나 조기노령 연금수급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특정 연령집단이나 직업군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는데 적합하지 않다.

2. 은퇴와 소득

은퇴가 정의되고 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는 “은퇴 이후 소득이 은퇴 이전 소득의 몇 %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크게 낮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통계청 1996년과 1999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은퇴가구로 규정하고 이들 가구의 평균소비와 전체 평균소득⁴⁾의 비교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원종욱(2000)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퇴시 필요 소득대체율은 44-67%(1996년), 53-71%(1999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고 은퇴가구가 아닌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가구를 은퇴가구로 가정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가구지출함수를 이용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여윤경(2002)과 안종범·전승훈(2005)의 연구가 있다. 먼저, 여윤경(2002)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구의 소비함수가 비은퇴가구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생애주기모형의 가정하에 비은퇴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은퇴가구에 적용하여 은퇴시 필요한 소비수준과 이를 은퇴이전 소비수준과 비교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목표 소득대체율은 부부가구와 독인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82%, 8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은퇴가구를 정의함에 있어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0인 가구로 정의하여 단순히 해당연도

4)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생애평균소득은 횡단면자료의 평균 총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소득대체율 = 은퇴 후 소비/생애평균소득.

의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가구를 은퇴가구로 정의하여 은퇴가구를 과대추정하고 있으며 원종욱(2000)에서와 같이 횡단면자료를 사용에 따른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여윤경(2002)의 분석방법을 원용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안종범·전승훈(2005)은 기존의 횡단면 분석에 감안하지 못하는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여 기존 연구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이들은 『한국노동패널』 2-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은퇴여부에 대한 문항에 은퇴한 것으로 대답한 응답자 가구를 은퇴가구로 정의하고 여윤경(2002)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통하여 은퇴 및 비은퇴가구를 통합한 가구지출함수를 추정하고 은퇴 이후 추정지출과 은퇴 이전의 수입의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은퇴 전후 시기의 소비수준 변화는 1%로 생애주기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판별하고 은퇴 이전 소득과 은퇴 이후 추정지출과의 비율로 정의한 소득대체율은 6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측치를 사용하지 않고 추정치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3. 은퇴와 소비

은퇴 이후 소비수준이 은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은퇴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가설대로라면 은퇴시기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이성적인 사람들은 은퇴 이전에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즉, 은퇴 전후에 소비가 급격히 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가설과는 달리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많은 가구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Hamermesh, 1984; Mariger, 1987; Banks, Blundell, and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등)⁵⁾.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이라 하고 있으며 이에 관

5) 기존연구에 의하면, 은퇴 후 소비수준은 은퇴시기 및 소득 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하거나 여가와 소비가 대체관계인 경우 그리고 가계에 경제행위의 의사결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감소하기도 한다.

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노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안종범(2004)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은퇴 이후 소득수준이 은퇴 전에 비해 6% 가량 감소하지만 소비수준은 거의 변화하지 않아 은퇴를 전후하여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생애주기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비를 비교함에 있어 동일한 은퇴자 가구의 은퇴 전후의 소비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기 보다는 동일한 시점에 은퇴한 가구들의 평균 소비액을 비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⁶⁾.

Ⅲ. 분석자료 및 자료구축과정 소개

소득과 소비지출로 측정된 가계 재정상태가 은퇴라는 사건에 의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은퇴자나 은퇴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은퇴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패널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⁷⁾이 있다. 이 중에서 『고령화연구패널』은 개인의 건강, 고용, 소득, 자산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되어 있지만 현재 1-2차년도 자료만이 구축된 상태이고 소비지출에 대한 측정은 2차년도 조사에

6) 패널자료는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응답 거부, 이사, 기타 요인 등에 의해 조사에서 일부 가구나 개인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본탈락이 발생하더라도 표본탈락이 무작위성(randomness)을 가진다면 표본탈락 가구나 개인의 자료를 제외시키더라도 표본의 일치성(consistency)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표본탈락이 특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반대로 특정 집단에서 평균적 탈락률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표본탈락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표본탈락으로 인한 표본자료의 무작위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7)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연금 및 고령화 관련 패널조사인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나 영국의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등의 영향을 받아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11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가족관계, 노후보장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들어와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은퇴 전후의 가계 재정상태는 알 수 없다. 반면에 『국민노후보장패널』은 현재 1-3차 조사 자료가 구축된 상태이고 가계 재정상태가 1차 조사부터 측정되어 있어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퇴가 정의되고 이를 기점으로 ± 1 기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은퇴를 기점으로 ± 1 기의 가계 재정상태를 살펴보는 이유는 가계 재정상태의 규모와 구성요소의 비율이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석상훈·장선구,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은퇴는 1-3차 조사에서 측정된 직업력 정보를 활용하여 생애 근로경험을 그만두는 시점을 의미하고 그 이후를 은퇴기간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 기간이 존재하는 개인을 은퇴자로 그리고 은퇴자가 속한 세대를 은퇴자 세대로 정의한다. 이러한 은퇴에 대한 정의는 은퇴를 응답 대상자나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집단만을 한정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은퇴를 정의하고 나면, 은퇴자 세대의 재정상태는 누구까지 포괄하여 살펴볼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은퇴자 1인 가구나 가구주가 은퇴한 부부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은퇴자 세대는 1인 가구나 부부가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은퇴자 세대는 가구원 가운데 50세 이상의 은퇴자가 있는 세대로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분석에 포함하도록 한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되는 은퇴자 세대의 재정상태는 자녀세대까지 포함하지 않고 은퇴자가 포함되어 있는 은퇴자 부부(배우자가 없으면 개인)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은퇴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은퇴자 세대의 재정상태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은퇴자 가구 가운데 자녀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은퇴자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의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구내에서 은퇴자 세대는 하나의 생활단위로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후준비는 은퇴자 세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들의 노후생활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가구와 개인을 조사하는 일반 패널조사와 달리 조사단위가 2차년도까지 가구, 부부*, 개인의 3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는 모든 항목이 개인단위로 측정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가구원은 가구주와의 관계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이를 1-2차년도와 동일하게 부부단위로 추출하여 자료

를 구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은퇴자 세대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획득 형태나 소득의 발생원천, 조세 및 각종 공과금의 합산 또는 차감에 따라 크게 1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치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은퇴자 세대의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개인연금소득이 포함한다. 그리고 이전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⁸⁾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이전소득에는 정부보조금(공공부조 생계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과 사회보험 급여(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를 포함한다. 은퇴자 세대소득의 정의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와 다른 점은 사적이전소득에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받는 가족간 이전소득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가족내 이전소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은퇴자 세대에게는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주요한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은퇴자 세대의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머지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경상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들 소득을 모두 합하여 은퇴자 세대의 소득으로 정의한다⁹⁾.

마지막으로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앞서 언급한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2005년(1차년도 조사시점)과 2007년(2차년도 조사시점)에 은퇴한 개인을 선별한다. 이후 이들 은퇴자가 속한 세대의 재정상태는 가

8)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을 통하여 가족부양을 전제로 하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고령자와 그의 배우자라는 중고령자 부부단위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즉,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고령자 세대의 소득원으로 허용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9) 배우자가 없으면 개인에 대해 조사한다.

10) 통상적으로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성격상 공적연금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1) 세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석상훈(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주와의 관계코드를 이용하여 개인단위로 측정된 항목은 부부단위로 합산한 다음 세대코드를 생성하여 1-3차의 조사결과를 연결하여 은퇴시점(t기)을 기점으로 은퇴 전년도(t-1기)와 은퇴 이듬해(t+1기)의 정보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은퇴한 1차년도 은퇴자는 2004년까지 근로활동을 하다가 2005년에 생애 근로를 마감하여 2006년부터는 계속 비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을 의미하고, 은퇴자가 속한 세대의 재정상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해 전의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은퇴 이전(2004년)의 정보는 1차년도

표 1. 자료 추출과정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사차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은퇴자	경제활동상태	취업	은퇴	비취업	비취업	비취업	비취업
	소득/소비 자료	Yw, Cw		Yr, Cr			
2차년도 은퇴자	경제활동상태	취업	취업	취업	은퇴	비취업	비취업
	소득/소비 자료			Yw, Cw		Yr, Cr	

주 : Yw - 은퇴 전 소득
 Yr - 은퇴 후 소득
 Cw - 은퇴 전 소비
 Cr - 은퇴 후 소비

조사결과에서 추출하고 은퇴 이후(2006년)의 정보는 동일한 은퇴자가 속한 세대의 2차년도 조사결과에서 관련 정보를 끌어오게 된다. 2007년에 은퇴한 세대의 정보도 동일한 과정을 걸쳐 구축되고 2005년에 은퇴한 세대 정보와 결합하여 은퇴 전후의 재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세대자료가 만들어지게 된다. 끝으로 배우자의 사망이나 혼인으로 인한 세대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은퇴를 기점으로 ±1기의 세대구성이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가계 재정 규모는 세대원수(N)의 제공근으로 조정하고 시점이 다른 명목변수를 비교하기 위해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모든 변수를 실질변수로 전환한다.

IV.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 비교

은퇴자 세대의 재정상태가 은퇴라는 사건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통하여 은퇴자의 특성과 세대구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표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은퇴자는 총 374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234명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7.4%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교육수준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초졸 이하가 265명으로 71.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이상은 105명으로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한편, 배우자가

표 2. 은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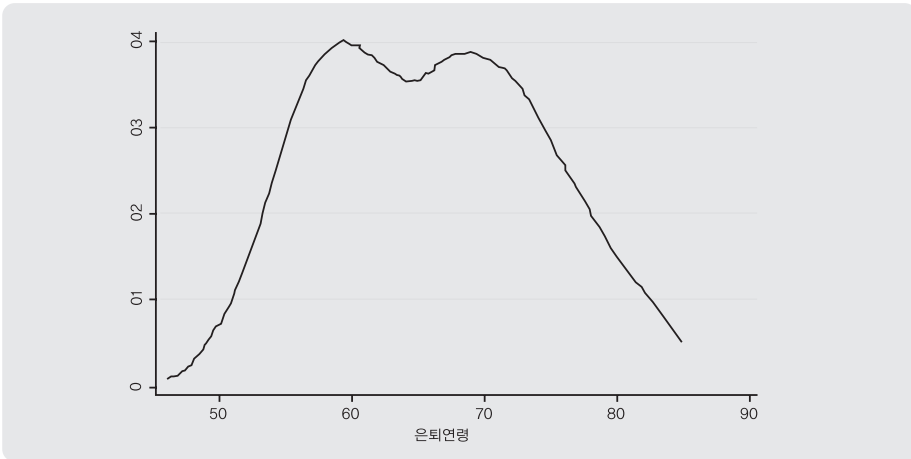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중
성별	남성	234	62.6
	여성	140	37.4
교육수준	무학	104	28.1
	초졸	106	28.7
	중졸	55	14.9
	고졸	78	21.1
	대졸 이상	27	7.3
배우자 유무	있음	246	65.8
	없음	128	34.2
세대구성	독신	89	23.8
	세대주+자녀	20	5.4
	세대주+기타	18	4.8
	부부	132	35.3
	부부+자녀	80	21.4
	부부+기타	37	9.8

12) 은퇴자 가운데 4명은 교육수준이 결측치로 처리되어 있다.

있는 은퇴자는 246명으로 65.8%이며 배우자가 없는 은퇴자는 128명으로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가 132세대로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독신가구로 89세대 23.8%이며 이들 세대를 합하면 59.1%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머지 40.9%는 자녀를 포함한 다른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연령은 쌍봉형태로 50대 후반과 60대 후반

그림 1. 은퇴자의 연령 분포



에 몰려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6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 은퇴자 세대의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를 비교하고 은퇴를 전후하여 차이가 있는지는 paired t-test를 통하여 검증해보자. 먼저, 은퇴 전후의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배우자 유무를 고려하여 산출한 근로자 세대의 균등 세대소득은 연평균 1,84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원천 가운데 근로소득은 77.7%(1,434.3만원)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은퇴 전 근로자 세대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소득 9.8%(181.7만원),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9.3%(171.2만원), 공적이전소득 2.7%(49.6만원), 부동산소득 2.5%(46.7만원), 금융소득 1.1%(2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전소득은 동거하는 가족 보다는 비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의

비중이 많았으며, 부동산소득은 월세 등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 및 투자수익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퇴자 세대의 균등 세대소득을 살펴보면, 은퇴 이후 소득은 연평균 833.0만원으로 은퇴 전과 비교하여 5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은퇴 이전 소득원이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사라진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주된 소득원으로 이전소득과 연금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은퇴자 세대의 소득원으로는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26.7%(222.1만원)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소득 23.1%(192.7만원), 공적연금 22.9%(190.7만원), 부동산소득 8.1%(67.6만원), 금융소득 5.7%(47.1만원)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퇴소득에서 주된 소득원으로 자녀로부터

표 3. 은퇴 전후의 소득 구조

(단위: 만원)

구 분	은퇴 전		은퇴 후		p value
	Mean	(SD)	Mean	(SD)	
총소득	1,846.0	(2,372.6)	833.0	(1,549.7)	<0.01
경상소득	1,674.2	(1,870.5)	641.1	(937.5)	<0.01
근로소득	1,434.3	(1,911.6)	0.0	(0.0)	<0.01
연금소득	0.0	(0.0)	197.5	(752.2)	<0.01
공적연금	0.0	(0.0)	190.7	(738.1)	<0.01
사적연금	0.0	(0.0)	6.8	(128.8)	0.31
이전소득	216.2	(282.3)	308.2	(413.6)	<0.01
공적이전	49.6	(143.4)	86.5	(182.3)	<0.01
사적이전	171.2	(258.1)	222.1	(378.9)	0.02
자산소득	57.3	(179.8)	109.0	(350.5)	<0.01
금융자산	21.0	(70.0)	47.1	(214.3)	0.01
부동산자산	46.7	(199.8)	67.6	(252.8)	0.04
기타소득	181.7	(1,233.6)	192.7	(1,072.5)	0.89

주 : 1) 총소득 = 경상소득 + 기타소득

2)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자산소득

3) p value는 paired t-test의 값임.

4) 분석대상은 374 세대이며 무응답으로 인하여 소득항목간 합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터의 소득이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퇴자 세대의 은퇴 전후 소득 구성요소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소득원천으로 기여율이 저조한 사적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 구성요소들은 은퇴를 전후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은퇴를 전후하여 소비지출 구성항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소득과 동일하게 배우자 유무를 고려한 근로자 세대의 균등 가계지출은 연평균 828.9만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전 지출비중 순위 5가지의 비목으로는 식비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및 광열수도비 16.1%, 보건의료비 12.9%, 기타

표 4.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 구조

(단위: 만원)

구 분	은퇴 전		은퇴 후		p value
	Mean	(SD)	Mean	(SD)	
가계지출	828.9	(538.4)	762.8	(586.8)	0.06
소비지출	696.5	(388.7)	603.6	(415.6)	<0.01
식비	211.1	(133.9)	203.3	(146.3)	0.33
주거/광열수도비	133.5	(101.2)	121.0	(84.8)	0.08
피복비	24.9	(46.3)	19.7	(26.6)	0.07
교통/통신비	92.3	(93.6)	88.8	(117.1)	0.65
문화생활비	18.9	(33.8)	20.0	(62.4)	0.80
보건의료비	107.1	(183.6)	92.9	(177.3)	0.31
가구집기/사서비스구입비	8.6	(22.0)	9.7	(30.9)	0.65
교육/보육비	2.8	(40.3)	0.5	(6.7)	0.41
기타소비	99.7	(133.2)	105.1	(133.6)	0.58
비소비지출	108.8	(252.1)	84.8	(233.9)	0.17

주 : 1) 총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2) 가계지출 = 식비 + 주거/광열수도비 + 피복비 + 교통/통신비 + 문화생활비 + 보건의료비 + 가구집기/가사서비스구입비 + 교육/보육비 + 기타소비¹³⁾

3) 분석대상은 210 세대이며 무응답으로 인하여 소비비목간 합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3) '기타소비'는 경조사 부조금/기부금, 잡비(담배 구입비, 미용비), 목욕료, 화장품 구입비, 교제비, 모임 회비 등 통상적인 제 생활유지비, 가구원 생활보조금(용돈 등), 결혼비용, 장례비용,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소비 12.0%, 교통통신비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은퇴자 세대와 비교해 보면, 은퇴자 세대의 균등 가계지출은 연평균 762.8만원으로 은퇴 전과 비교하여 7.9% 감소하였으며 은퇴자 세대의 지출비중 순위 5위까지의 비목은 은퇴 전 근로자 세대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순위에 있어서 기타소비와 보건의료비의 순서가 뒤바뀌는 차이만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 전 소비지출 비목과 비교하여 주거/광열비, 피복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이를 포함한 소비지출과 전체 가계지출도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은퇴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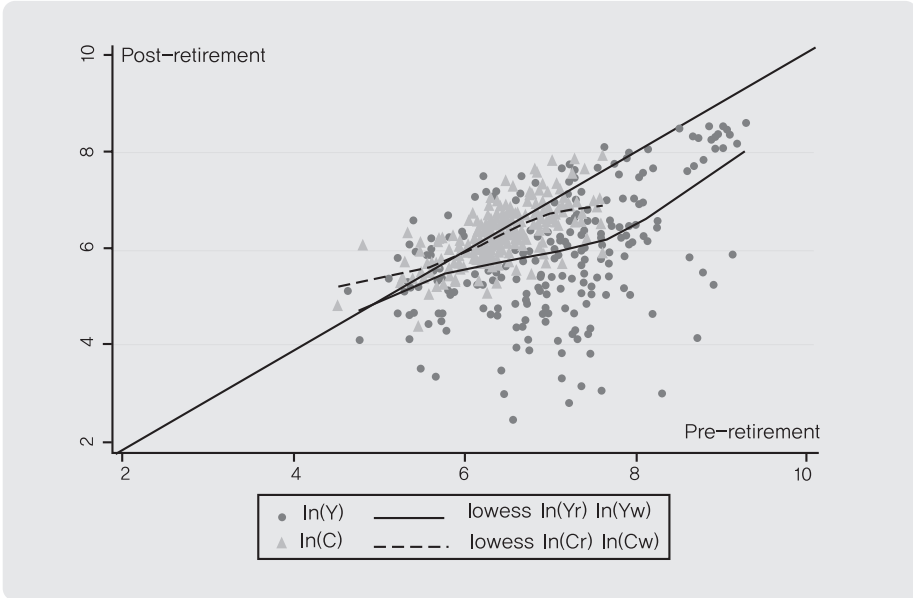
V. 적정소득대체율 도달 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비교는 동일한 세대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퇴 전 근로자 세대의 평균과 은퇴 후 은퇴자 세대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은퇴 전 소득과 소비지출을 X축, 은퇴 후 소득과 소비지출을 Y축으로 하여 각각의 관찰값을 XY 평면상의 좌표값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LOWESS¹⁴⁾ 분석 결과, 은퇴 이전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에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지출은 은퇴를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은퇴 전에 소비수준이 낮았던 계층에서는 오히려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은퇴 전후의 재정상태 변화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은퇴 전후의 대체율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ratio1은 분자에는 은퇴 후 소득을 그리고 분모에는 은퇴 전 소득으로 한 은퇴 전후의 소득대체율로써 그 비율은 0.55로 이는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세대의 은퇴 후 소득수준은 평균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ratio2는 분자에는 은퇴 후 소비를 그리고 분모에

14)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은 비모수(non-parametric) 추정기법으로 사전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만을 이용하여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림 1.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산점도



- 주: 1) Yw - 은퇴 전 소득
 2) Yr - 은퇴 후 소득
 3) Cw - 은퇴 전 소비
 4) Cr - 은퇴 후 소비
 5) 실선은 은퇴 전후의 소득 LOWESS 추정치이며, 점선은 은퇴 전후의 소비 LOWESS 추정치임.

는 은퇴 전 소비로 한 은퇴 전후의 소비대체율로써 그 비율은 0.94로 소득과는 달리 은퇴로 인한 소비의 감소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atio3은 분자에는 은퇴 후 소비를 그리고 분모에는 은퇴 전 소득으로 측정하는 은퇴 전후의 소득대체율로써 그 비율은 0.84로 이는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84%가 필요함을 의미한다¹⁵⁾.

통상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은퇴 전의 소득수준으로 영위했던 생

15) 여기서 은퇴자 세대의 필요소득수준이 은퇴 전 소득의 84%라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의미한다.

표 5. 다양한 정의에 의한 소득대체율

구분	Mean	Std. Dev.	Min	Max
ratio1(은퇴 후 소득/은퇴 전 소득)	0.55	0.54	0.00	3.53
ratio2(은퇴 후 소비/은퇴 전 소비)	0.94	0.46	0.18	3.38
ratio3(은퇴 후 소비/은퇴 전 소득)	0.84	0.68	0.08	5.05

활과 은퇴 후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은퇴 후 생활이 은퇴 전에 누렸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은 분자에는 은퇴 후 소비로 하고 분모에는 은퇴 전 소득으로 한 소득대체율(ratio3)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은퇴행위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행위가 그들의 주요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세대 가운데 은퇴 이후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에 도달한 세대는 어떤 집단이며 다양한 노후소득 마련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유효하게 작용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분자에는 은퇴 후 소득으로 하고 분모에는 은퇴 전 소득으로 한 소득대체율(ratio1)을 각 은퇴자 세대별로 산출하여 이를 앞서 정의한 목표소득대체율과 비교하여 은퇴자 세대별로 은퇴 전 생활수준을 영위하기에는 위험한 집단과 적정수준에 도달한 집단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보다 10% 이하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퇴 전 생활수준을 영위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이와 반대로 은퇴자 세대별로 산출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의 90% 이상인 경우를 적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정의한다¹⁶⁾.

이러한 기준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에 도달한 은퇴자 세대는 분석대상인 총 291세대¹⁷⁾ 중 89세대로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된 세대는 202

16) 이는 Boston College의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에서 은퇴 위험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17)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 변수 가운데 무응답이 존재하는 세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들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추정된 소득대체율(ratio1)이 적정수준에 도달한 은퇴자 세대는 어떤 집단이며 노후소득 마련 방법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유효하게 작동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7>과 같이, 종속변수로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초과) 여부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목표소득대체율과 비교하여 은퇴자 세대별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퇴자의 성별, 교육수준, 은퇴 당시 연령, 배우자 유무 등과 함께 노후소득원으로 공적연금, 가족으로부터의 소득이전, 그리고 자산소득의 유무와 금액 변수가 사용되었다.

표 6.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설명

구분	설명	Mean	Std. Dev.	Min	Max
index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초과) 여부(1=달성)	0.3	0.5	0	1
sex	성별(1=남성)	0.6	0.5	0	1
ret_age	은퇴연령	66.0	8.3	46	85
edu	교육수준(1=고졸 이상)	0.3	0.5	0	1
spo	배우자유무(1=있음)	0.7	0.5	0	1
pension1	공적연금수급여부(1=수급)	0.2	0.4	0	1
transfer1	사적이전소득유무(1=있음)	0.6	0.5	0	1
asset1	자산소득유무(1=있음)	0.3	0.4	0	1
pension2	공적연금수급액(만원)	190.7	738.1	0	4,981.6
transfer2	사적이전소득액(만원)	225.3	386.6	0	2,320.5
asset2	자산소득액(만원)	115.8	352.4	0	2,526.8

적정소득대체율 도달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1과 모형2는 각각 노후준비 수단으로써 노후소득원에 대한 유무 변수와 금액 변수를 가진다. 두 모형 모두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다는 없는 경우에 적정소득대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일반적으로 고소득계층에서는 낮고 저소득계층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지표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수준이 낮아 배우자가 있는 일반 은퇴자 세대 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적정소득대체율을 논의함에 있어 은퇴 전 소득계층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은퇴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정소득대체율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수단과 관련하여 모형1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소득지원이 있는 경우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승산(odds)을 2.58배 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을 수급할 경우 적정소득대체율에 도달할 승산을 2.08배 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를 통해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노후소득의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자산 축적 여부는 적정소득대체율 도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형2는 노후소득원의 금액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형1에서와 같이 가족으로부터의 소득 지원이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적정소득대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개인 스스로가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자녀나 가족에 의해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을 것이다. 한편 다른 하나의 노후소득원인 공적연금은 수급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금액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자산소득은 소득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금액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산소득이 클수록 적정소득대체율의 도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1)			(2)		
	Coef.	Std. Err.	Odds Ratio	Coef.	Std. Err.	Odds Ratio
_cons	-5.89***	1.45	-	-6.73***	1.53	-
sex	0.38	0.52	1.47	0.70	0.56	2.02
ret_age	0.07***	0.02	1.07	0.08***	0.02	1.08
ed_d	0.14	0.37	1.15	-0.23	0.44	0.79
spo	-1.00**	0.51	0.37	-1.57***	0.56	0.21
pension1	0.73*	0.42	2.08	-	-	-
transfer1	0.95***	0.35	2.58	-	-	-
asset1	0.07	0.33	1.07	-	-	-
pension2	-	-	-	<0.01	<0.01	1.00
transfer2	-	-	-	<0.01***	<0.01	1.00
asset2	-	-	-	<0.01***	<0.01	1.00

Number of obs = 288

LR chi2(7) = 30.11

Prob > chi2 = <0.01

Log likelihood = -163.02

Number of obs = 288

LR chi2(7) = 70.14

Prob > chi2 = <0.01

Log likelihood = -143.01

주 :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각각 유의함

VI. 결론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이에 비해 소비지출은 은퇴를 전후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퇴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은퇴 전 총소득 가운데 78%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사라짐에 따라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은퇴 후 가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는 전체적으로 은퇴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목표소득대체율을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비로 정의할 경우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개별 은퇴자 세대의 소득대체율이 이를 충족한 경우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이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퇴자 세대에서는 은퇴 후에도 생활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은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고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은퇴는 과거와는 다르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없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이후의 급격한 생활의 질 하락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OECD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3층보장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3층보장은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이에 해당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인 국민연금과 기업보장인 퇴직연금에 개인적인 준비를 통한 개인연금도 보유하여 3층보장의 틀을 갖추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층보장 중 퇴직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파트타임과 같은 경제활동을 지속해 연금수령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기간을 연기할 경우 1년 마다(최대 5년)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현행 연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석상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령화, 은퇴, 빈곤이며, 현재 은퇴, 노후준비, 노인빈곤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shseek@nps.or.kr).

참고문헌

- 김수완, 조유미(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후 소득원천, KLIPS Research Brief, 3.
- _____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pp.55-76.
- 백은영(2007). 여성노인가계의 걱정 소득대체율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4(2), pp.1-24.
-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제 24(2), pp.27-51.
-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임정기(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 요인. *한국노년학*, 27(1), pp.1-22.
- 안중범(2004). 인구고령화와 소비,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 안중범, 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걱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pp.5-33.
- 여운경(2002).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pp.83-97.
- 여운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pp.21-36.
- 여운경, 정순희, 문숙재(2005).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0(3), pp.29-155.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45, pp.32-42.
-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pp.189-214.
- 최효미(2007).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노동리뷰*, pp.69-79.
- Ando, A, and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pp. 55-84.
- Banks, James, Richard Blundell, and Sarah Tanner, 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 *American Economic Review*, 88(4), pp.769-788.
- Bernheim, B. Douglas, Jonathan Skinner, and Steven Weinberg(2001).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pp.832-857.

Hamermesh, Daniel S.(1984). Consumption during Retirement: The Missing Link in the LifeCycl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1), pp.1-7.

Mariger, Randall P.(1987). A Life-Cycle Consumption Model with Liquidity Constraint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Econometrica*, 55(3), pp.533-557.

Longitudinal Evidence on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in Korea

Seok, Sanghu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a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e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Keywords: Retirement, Income, Consumption, Income Replacement Ratio